

[별지 제49호서식] <개정 2007.6.7>

제 호		☐ 검사부적합 통지서 ☐ 시정권고	
성 명 (명 칭)		검 사 접 수 번 호	
자동차등록번호		재 검 사 기 간	
부 적 합 내 용			
시 정 권 고 내 용			
주 : 시정권고 내용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주가 수리(정비)등의 조치를 한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			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 니다.			
년 월 일			
자동차검사대행자(지정정비사업자) 인			
※재검사에 관한 안내 1. 재검사대상인 경우에는 수리·정비를 완료한 후 이 통지서를 제시하고 자동 차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2. 재검사대상인 자동차는 검사를 받은 검사소(지정정비사업자)에서 검사를 받 아야 합니다.			

33331-04611일

210mm×297mm

98.3.13 승인

(일반용지 60g/m²)